

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08. 11. 27

5차 개정 2023.06.1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실험 동물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, 조사 및 교육과 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. 단, 「동물보호법」, 「동법 시행령」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.

제3조(소관부서) 본 위원회의 운영은 교무·연구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9.06.25)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동물실험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
2.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4.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
5.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

제5조(구성 및 임기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11.10.)

1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로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2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(개정 2023.06.12.)
 2.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
 3. 변호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
 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(전문)대학에서 동물보호·복지를 담당하는 교수
-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,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선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전문위원 및 자문위원) ① 동물실험신청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담당하고 동물실험신청 심의 및 통보 등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. (개정 2023.06.12.)
-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권한 및 책임)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에 부합하여 시행되도록 지도·감독하며,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

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17.11.10.)

-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심의대상인 연구·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·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위원회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·평가할 수 있으며, 시정 권고할 수 있다.(항 신설 2015.07.31)

제10조(심사) ① 위원회는 본교 내 모든 동물실험(시설), 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, 정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1.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, 과학적 타당성
2.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
3.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
4. 저침습성 처치,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가능성
5. 적절한 진정, 진통 및 마취법
6.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
7.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
8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그 결과를 승인, 보완 및 수정, 부결로 결정한다.

④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⑤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⑥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(항 신설 2015.07.31)

제11조(승인 및 조치)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④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항 신설 2015.07.31)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326, 2008.11.27)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717, 2013.10.31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410, 2015.07.07)

이 규정은 2015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454, 2017.11.10)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353, 2023.06.12)
이 규정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